

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277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26. 1. 22.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~제3항

3. 주요내용

- 계획기간
 - 제8기 4차년 계획: 2026년
- 주요내용
 - 제8기(2023~2026년) 달성군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
 - 2025년(3차년도) 시행결과
 - 2026년(4차년도) 시행계획
 - 주요 성과지표 및 세부추진계획

4. 계획(안): 따로 붙임

□ 지역보건법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시·군·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의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